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5 - 12 - 050호
(사건번호 : 201501조사001, 201503조사006~007)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①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장동현

② [REDACTED]

③ [REDACTED]

의결연월일 2015. 3. 26.

주 문

1. 피심인①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피심인①의 대리점·관련 판매점으로 하여금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및 피심인①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각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①은 이용자의 가입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관리 자료가 적법하게 기록 및 관리되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고객관리전산, 대리점영업전산 등에 가입자의 가입·이용·해지에 따른 거래조건 등의 상세내용이 투명하게 기록·관리 및 수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그와 같이 개선된 바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제출하며, (ii)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개발 중이거나 새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iii) 사내 인트라넷, 업무용 클라우드, 메신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수립·시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①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①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①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①은 7일 동안(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 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예외)를 포함한다.

5. 피심인①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①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 SK텔레콤(주) : 과징금 23,500,000,000원

나. 피심인② [REDACTED] : 과태료 5,000,000원

피심인③ [REDACTED] : 과태료 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 피심인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가입자 수는 28,613천명으로 전체시장의 50.01%(‘14.12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13조 8,115억원(‘13.12월말 기준)으로 53.0% 점유

< SKT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가입자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SKT	28,613 (50.01%)	138,115 (53.0%)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MVNO 가입자 포함

2. 이동전화 시장현황

- (1) (조사대상기간 시장상황) 1월 6~7일, 1월 17~19일에 피심인①의 주도로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장려금(이하 ‘과다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이 발생
 - 1월 6(화)~7(수) 피심인 ①의 과다 장려금 지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고한 바 있으며,
 - 특히, 1월 17(토)~18(일) 주말에 재차 과다 장려금 지급 등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통3사에 대하여 1월 19(월)~20(화) 이틀간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피심인①이 1월 19일까지 과다 장려금의 지급을 지속하는 등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통3사의 과열경쟁에 대해 수차례 시정 및 경고를 취하면서, 시정 요구시 2시간 이내에 미조치하는 경우,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단독조사·제재하겠다는 내용으로 수 차 통보한 바 있음

- 1월 17(토)~19(월)간 피심인①의 시장상황을 보면 장려금 수준은 최대 48만원, 번호이동은 1월 19(월)~20(화)간 8,505건의 순증을 보였음

< 장려금 측면 : 과열기간 갤럭시노트4 장려금 지급 수준 > (단위 : 만원)

구 분	SKT			KT			LGU+		
	17일	18일	19일	17일	18일	19일	17일	18일	19일
장려금 지급 수준 (삼성 노트4)	48	48	43	37	33	20	33	33	25

< 번호이동 측면 : 이통3사 순증 현황 >

구분	SKT	KT	LGU+
1.19~20.일간	+8,505	△8,712	+207

* 번호이동은 1.16일(금) 저녁부터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산개통 반영이 안 된 점과 17일(토)~18일(일) 주말전산이 닫혀있던 점을 고려하여 19일(월)~20일(화) 2일 기간동안 번호이동 개통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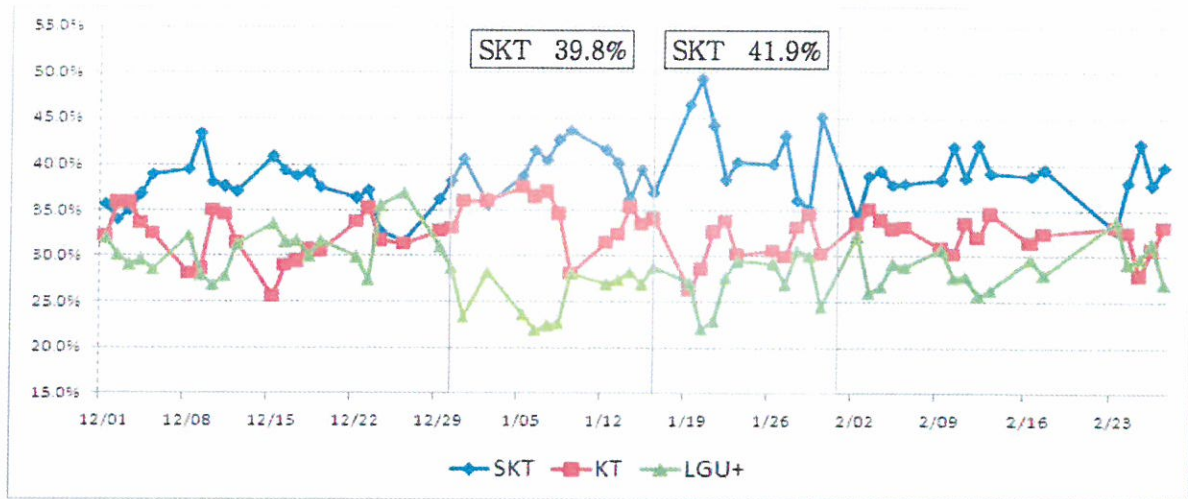
- o 피심인①의 최근 월간 번호이동 점유율을 보면, ('14.12월) 37.4%, ('15.1월) 40.9%, ('15.2월) 38.8%로 1월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순증·감 실적에서도 계속 순감을 유지해오다가 1월에 2,145건의 순증을 보였음

< 이통3사 1월 번호이동 시장점유율 >

구분	SKT		KT		LGU+	
	일일MNP	점유율	일일MNP	점유율	일일MNP	점유율
'14.12월	4,790	37.4%	4,139	32.3%	3,885	30.3%
1월상순 (1.1~16)	5,907	39.8%	5,092	34.3%	3,834	25.8%
1월하순 (1.17~30)	6,631	41.9%	4,933	31.1%	4,281	27.0%
'15.2월	4,577	38.8%	3,834	32.5%	3,371	28.6%

※ '15.1.19~20.간 SKT의 번호이동 점유율은 47.3%

< 최근 3개월 이통3사 일일 번호이동 점유율 현황 >



< 최근 번호이동(MNP) 순증·감 현황 >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SKT	△2,260	△11,762	△27,624	2,145
KT	△4,285	△19,444	△15,903	△16,689
LGU+	6,545	31,206	43,527	14,544

- (2) (조사착수 이후 특이동향) 사실조사 착수(1.21.) 이후에도 피심인 ①은 단독 사실조사와 상관없이 시장과열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는 과다 장려금 정책을 지속하였음

< 피심인 ①의 과다 장려금 지급사례 >

(단위 : 천원, 개)

구분	1/16 (금)	1/17 (토)	1/18 (일)	1/19 (월)	1/20 (화)	1/21 (수)	1/22 (목)	1/23 (금)	1/24 (토)	1/25 (일)	1/26 (월)	1/27 (화)	1/28 (수)	1/29 (목)	1/30 (금)
노트4 장려금수준	438	464	464	464	449	530	300	464	485	485	485	420	358	486	450
신고 대리점 수	2	60	65	-	63	74	71	31	29	111	5	11	10	12	24



조사 실시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5.1.1.~1.31.)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받은 유통점 및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38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유통점 구성 >

구 분	신고 및 제보	조사기간중 실적상위	계
조사대상 유통점	25	13	38

< 유통구조별 구성 >

구 분	대리점	판매점	계
조사대상 유통점	5	33	38

* 대리점의 경우 PC교체 등 판매 원천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추가조사 곤란

- 가입자 표본은 피심인①의 가입건수 992,596건 중 2,960건(총 가입자의 0.3%)이며, 가입형태별로는 신규가입 2,338건(번호이동 1,758건, 일반 580건)과 기기변경 가입 622건임

< 가입형태별 구성 >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계
	번호이동	일반(010)		
조사표본	1,758	580	622	2,960

2. 행위사실

(1) 지원금 과다지급

-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 유통점에서 피심인①의 가입을 위해 모집한 2,960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 31개 유통점 2,050건(전체 조사대상의 69.2%)에서 피심인①이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의 범위를 더한 금액보다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전체 위반내역 >

구분	조사건수	평균 출고가	평균지원금	위반건수	평균 과다 지원금	위반율
SKT	2,960건	732,181원	391,549원	2,050건	228,449원	69.2%

- 유통점별 과다 지원금 수준은 대리점은 315,572원, 판매점은 217,331원

< 유통점(대리점·판매점)별 위반 내역 >

구분	대리점	판매점	계
총 가입자 수(%)	619,354(62.4)	373,242(37.6)	992,596
조사대상 수	453	2,507	2,960
위 반 수	232	1,818	2,050
과다 지원금(원)	315,572	217,331	228,449
위 반 율	51.2%	72.5%	69.2%

- 판매 상위 주요 단말기별 과다 지원금 수준은 '갤럭시 노트4' 264,851원, '아이폰6' 261,839원, '갤럭시 노트3' 147,851원

< 주요 단말기별 과다 지원금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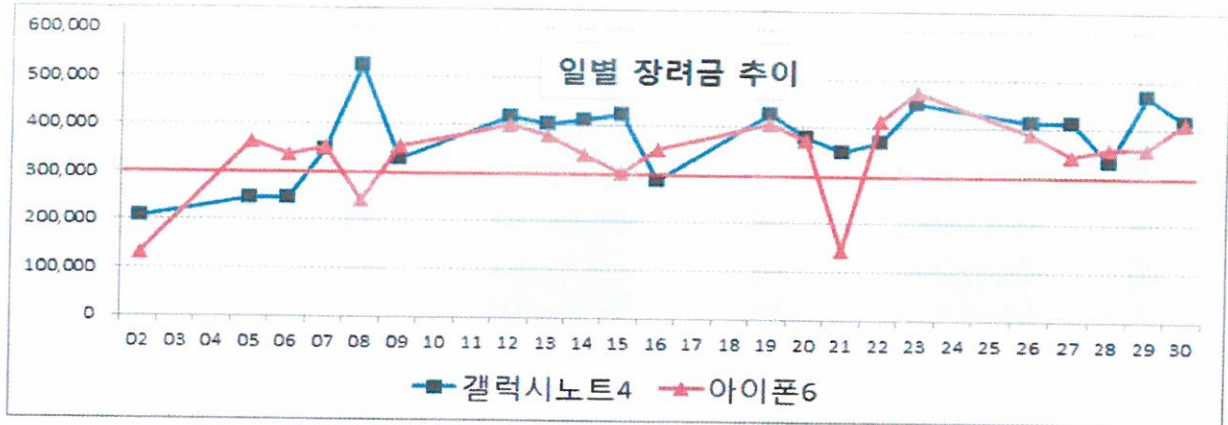
(대수 : 대, 금액 : 원)

구분	1월 판매대수	출고가	공시지원금	평균 과다 지원금
갤럭시 노트4	139,278	957,000	189,364	264,851
아이폰6	118,522	789,000	156,219	261,839
갤럭시 노트3	105,865	880,000	530,652	147,851

(2)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 o 피심인①은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경우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과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함



- o 1월 중 피심인①의 일별 번호이동 장려금 수준은 1월 초 뿐만 아니라
단독 사실조사 실시(15.1.2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수준이었음

< 1월 중 일별 장려금 수준 >

일자	평균 장려금			
	전체	번호이동	010신규	기기변경
2015-01-02	162,626	246,698	160,000	112,206
2015-01-05	251,985	337,246	215,455	107,074
2015-01-06	285,511	357,470	236,667	128,864
2015-01-07	355,305	407,298	254,420	121,591
2015-01-08	312,241	411,819	284,070	81,818
2015-01-09	250,886	347,396	229,833	80,148
2015-01-12	312,963	406,545	287,823	87,102
2015-01-13	327,868	406,022	268,330	115,730
2015-01-14	344,985	421,442	269,992	90,625
2015-01-15	353,987	414,953	295,476	106,154
2015-01-16	364,801	419,606	291,538	123,571
2015-01-19	420,935	447,194	440,378	101,053
2015-01-20	353,602	426,262	444,312	105,750
2015-01-21	308,175	370,500	318,286	131,111
2015-01-22	268,000	346,429	322,500	76,250
2015-01-23	354,254	434,636	380,000	67,368

일자	평균 장려금			
	전체	번호이동	010신규	기기변경
2015-01-26	357,689	401,152	331,800	126,500
2015-01-27	345,600	410,000	388,750	122,000
2015-01-28	238,100	362,857	222,410	90,000
2015-01-29	376,848	459,750	305,000	200,000
2015-01-30	350,259	320,760	400,926	35,000

(3) 사실조사 방해

○ 피심인①, ②, ③ 및 피심인①의 관련 유통점에서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 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작동 등 총 6건이 발생함

- (조사현장 접근 거부) 피심인①의 관련 3개 유통점에서 접근방해 (판매사무실 폐쇄, PC 파괴 등) 행위가 발생함

조사일자	대상(유통점 등)	유형	조사 거부·방해 내용
'15. 1. 30.	■■■■신	판매점	가입신청서를 찢고, PC본체 파괴
'15. 1. 30.	■■■■■■■■■■션	대리점	본점 사무실 폐쇄, 개방 거부
'15. 2. 11.	■■■■■■■■■■점	대리점	사무실 개방 거부, 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잠적

- (자료삭제 지시) 피심인③ 및 피심인①의 대리점인 분당직영샵에서 각각 E-mail과 SMS를 통해 조사대상 자료를 삭제토록 전파·지시함

조사일자	대상(유통점 등)	유형	조사 거부·방해 내용
'15. 1. 21.	피심인③	개인	34개 지역 마케팅담당에게 판매일보, 정산 내역 등 일체의 자료 클린징 E-mail 지시
'15. 1. 19.	분당직영샵	대리점	36개 산하 거래매장에 PC 및 판매일보 자료 클린징 SMS 지시

-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 피심인①의 대리점인 피에스엔 마케팅에서 현금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은닉·삭제할 목적의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작동하였으며, 피심인②는 이러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작동을 총괄하고 있었음

조사일자	대상(유통점 등)	유형	조사 거부·방해 내용
15. 1. 21. ~ 2. 13.	██████████(주)	대리점 및 개인(대표자)	- 단말기 판매 상세항목(현금대납, 페이백 등)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사방해 모드전환 전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작동 - 광주지점 및 춘천명동점 조사시 전산망 중단 을 통해 메신저 차단 등
	피심인②	개인 ██████████원 책임자)	- 단말기 판매 상세항목(현금대납, 페이백 등)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사방해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작동을 총괄 지휘 관리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에서 ①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②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③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④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 (1) (지원금 과다지급)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 피심인①과 해당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위반한 것임

- (2)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①이 대리점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임

- (3) (사실조사 방해) 피심인① 관련 유통점 및 피심인②, ③이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 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작동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등)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것임

IV.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①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피심인①의 대리점·관련 판매점으로 하여금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및 피심인①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각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절차 개선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가입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관리 자료가 적법하게 기록 및 관리되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고객관리전산, 대리점영업전산 등에 가입자의 가입·이용·해지에 따른 거래조건 등의 상세내용이 투명하게 기록·관리 및 수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그와 같이 개선된 바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제출하며, (ii)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개발 중이거나 새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iii) 사내 인트라넷, 업무용 클라우드, 메신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수립·시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①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①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신규모집 금지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7일 동안(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예외)를 포함한다.

5.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포함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①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피심인①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부과기준율은 2.5%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피심인①의 기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6,727억원(억원 이하 절사)에 2.5%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168억원(억원 이하 절사)이다.

2. 필수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별표3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과거 위반행위 중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①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3. 추가적 가중

사실조사 중 (i)피심인①의 위반행위가 지속되었고, (ii)피심인① 관련 유통점 및 피심인②, ③에 의한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기준과징금에 각각 20%씩 총 40%를 가중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①의 최종 과징금은 235억원이다.

VI. 과태료 부과

피심인②, ③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피심인②, ③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각 적용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500	1,500	3,000	5,000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②, ③은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i)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작동을 총괄한 피심인()와 (ii)E-Mail을 통해 조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피심인③()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Ⅶ.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①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피심인②, ③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Ⅷ. 결론

상기 피심인①, ②, ③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 3. 2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